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4. 7. .

제 출 자: 속 초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'94. 7. 6 (대통령령 제14, 317호)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목적중 결산검사위원의 "선임 및 운영"등을 "정수 · 선임 · 운영 및 실비보상" 등으로 하고 (안 제1조)
- 위원의 정수중 " 3인 이내 "를 " 3인이상 5인이내 " 로 하며 (안 제2조)
- 경비 지급기준중 【별표 1】의 경비금액 20,000원을 50,000원으로 인상하여 현행 의원의 회의참석 경비와 결산검사 기간중 경비금액을 같게 조정하려는 것임 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- '94. 7. 28 시정조정위원회개최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중 "선임 및 운영"을 "정수·선임·운영 및 실비 보상"으로 한다.

제 2 조중 "3인 이내"를 "3인이상 5인 이내"로 한다.

제 13 조의 【별표1】 일비란중 액수 "20,000원"을 "50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제3항 등법시행령 제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<u>선임 및 운영</u>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<u>정수 · 선임 · 운영 및</u> <u>실비보상</u>
제2조 (위원의 정수) 위원 의 정수는 <u>3인</u> 이내로 한다.	제2조 (위원의 정수) <u>3인</u> <u>이상 5인</u> 이내
【별표 1】	
구 분 액 수	구 분 액 수
일 비 <u>20,000원</u>	일 비 <u>50,000원</u>
여 비 (생략)	여 비 (현행과 같음)